파리시장 공약사항 소개 1
『학교 골목(Rues aux écoles) 안전 프로젝트』

〈2020.09.15.(화)〉

프로젝트 개요

○ **파리시내 초등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**을 두는 것으로서 학교주변 **학생들의 안전보장 및 학교 주변 대기·소음 공해의 저감**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(※ 시내 초등학교 26%가 이산화질소 NO2 허용치 상시초과)

사업추진 방법

□ **단계별 추진 - '추진학교 점진적 확대'**

○ 시범사업 : '19.11월부터 파리 10·18구 및 5구 일부학교 대상

○ 1단계 사업 : '20.9월 1일 개학을 계기로 57개 초등학교 대상

○ 2단계 사업 : '20. 9월말까지 80개 초등학교로 확대 예정

향후 사업효과 분석 후, 파리 시내 전체 유치원 및 초등학교(총 760개교)에 전면적으로 적용 예정임

□ **현장의 현실 반영 - '주민 및 차량이용자의 반대 극복'**

○ **차량통행 전면 금지** : 우회도로가 있는 학교 주변도로

- 9월 현재 57개교 중 29개교 대상으로 차량통행 전면 금지
- 대형화분 등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막고 안내판 부착 및 도로상에 표시
- 다만, 긴급차량, 장애인 수송 차량 및 배달차량은 통행 가능

○ **차량통행 속도 제한** : 우회 통행이 불가능한 학교 주변 도로

- 9월 현재 57개교 중 2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을 "평온 지역 (Zone apaisé)로 지정하여 최대 시속 20km로 제한

※ 기존에는 30~50km 속도제한을 두었음

프랑스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움직임

- 루앙 시 : '20.9월, 시내 4개 학교 골목에 시범운영 후 확대적용 계획 발표

검토의견

○ 우리나라는 **'20.3월부터 일명 '민식이 법' 시행**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규정을 강화한 바 있음

○ 그러나 스쿨존 내 안전사고 시 처벌 강화 또는 CCTV 등 각종 장비 설치로는 **원천적으로 어린이 안전보호를 담보하기에는 곤란**한 실정임

○ 따라서 **파리시와 같이 최소한 우회도로가 있는 지역 내 학교도로**에 대해서는 **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**가 있다고 판단됨

【참 고】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(“민식이법” 관련)

❑ “민식이 법” 개요

○ ‘19.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(당시 9세)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’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중

❑ “민식이 법” 주요내용

○ **도로교통법 개정**

-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, 과속 방지턱,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

○ **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**

-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.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~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

❑ 정부 “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” 발표(‘20.1.7)

① 전국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
(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)

②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

③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·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(승용차 기준)에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

④ ‘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

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을 ‘22년까지 모두 없앰